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9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유용원·성일종·김기웅

한기호 • 강선영 • 임종득

김용태 • 박정훈 • 엄태영
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 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,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 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 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"보전금"으로 명칭하고 있음.

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 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.

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 등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의 제목 "(보전금)"을 "(보상금)"으로 한다.
제47조제2항 중 "보전금"을 "보상금"으로 한다.
제48조제4항 중 "보전금"을 "보상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5조(보전금) (생 략)	제45조(보상금) (현행 제목 외의		
	부분과 같음)		
제47조(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	제47조(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		
조성) ① (생 략)	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	②		
금·부담금· <u>보전금</u> ·책임준비	<u>보상금</u>		
금, 기금운용수익금, 다른 기금			
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・전			
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			
한다.			
제48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	제48조(책임준비금의 적립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	4		
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<u>보전</u>	<u>보상금</u>		
<u>금</u> 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			
야 한다.			